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0
----------	-----

제출년월일 1996. 1.

제출자 제천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 중 게시판에 게시공포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규칙등을 게시공포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포방법을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규칙등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하면 것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로록 하고
-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로써 하도록 함 (안 제7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2조 제1항

- ※ 불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사본 1부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조례와 규칙'을 '조례·규칙'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포방법) 조례·규칙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제8조중 '반회보, 시보'를 '공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p>제6조 (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 (번호) ①조례·규칙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 (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반 회보,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p>	<p>제7조 (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 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p>
<p>제8조 (공포일) ①조례·규칙등의 공포일 은 반회보,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 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② (생략)</p>	<p>제8조 (공포일) ①----- ----- 공보 ----- ----- ② (현행과 같음)</p>

제 2 장 조례와 규칙

제11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 6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 6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5·7·1>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 1 항과 제11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7·1>

제13조 (공포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3 장 지방의회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여,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95·7·1>

제15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